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08. 7. 14 (월) 10:30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정윤숙 의원 외 7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8년 6월 30일

나. 회부일자 : 2008년 7월 7일

3. 제안 이유

-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의 적용대상을 도내에 소재한 여성기업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정함(안 제3조).

나. 여성기업 지원의 제한(안 제4조)

- 1) 여성기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여성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2) 지원 제한 기준의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함

다.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입지지원·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협력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

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안 제8조)

-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2)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국장, 회계과장으로 함.
- 3)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바. 도지사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사.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도입 및 경영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아.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로,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을 고취시키고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새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이 도내 여성기업 중 조례

에 의한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의 명확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효과적인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례의 시행상 제기되는 문제점과 미비 점은 없는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